

보다 안전한 미래
(사)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

(우)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(수서동, 로즈테일오피스텔 1828호) / Tel 02-567-1307/ Fax 02-567-1337

www.assi.or.kr E-Mail : assi1337@naver.com 담당 : 박용복 국장

문서번호 시험 2020 - 293호

시행일자 2020. 8. 18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| | | | | |
|---|----|---|---|--|
| 선 | | | 지 | |
| 결 | | | 시 | |
| 접 | 일자 | | 결 | |
| | 시간 | | 재 | |
| 수 | 번호 | | 공 | |
| 처 | 리 | 과 | 람 | |
| 담 | 당 | 자 | | |

제 목 ‘가스안전영향평가’ 용역 예산 설계 반영 건의

1. 국가기간 시설물 안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에 경의를 표합니다.
2.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2조 및 「동법 시행령」 제99조에 따라 공사장 주변의 피해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, 「도시가스 사업법」 제30조의 4 및 「동법 시행령」 제18조에 의하면 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, 지하차도, 지하상가, 지하보도 등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는 사업을 위하여 굴착공사를 함으로써 도시가스 배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배관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‘가스안전영향평가’ 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3. 우리나라는 1995년 대구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온바 있으며, 시설물을 발주함에 있어 설계서에 ‘가스안전영향평가’ 용역 대가를 반영하지 않아 도시가스로 인한 대형사고 등 안전관리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는 바 이에 설계반영을 건의하오니 청허
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 부 : (1) 가스안전영향평가 작성지침 및 수행절차 1부.

(2) 도시철도사업현장 가스안전영향평가 용역 대가 산출서(안) 1부. 끝.

(사)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



수신처 - 기획재정부, 행정안전부, 서울특별시, 부산광역시, 인천광역시, 광주광역시, 한
국철도시설공단